

Vol.1554



법원공보

2018. 10. 15. MON

법원행정처

● 목 차

규칙	1375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1377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379	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예규	1381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
	1383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418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1424	
인사	1429	
공지사항	1434	

● 규 칙

◎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05호 2018. 10. 8. 공포)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업무원가 및 보상이윤 등”을 “업무원가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출연금액의 확정 등) ①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에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공탁 관련 업무 원가 및 보상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p>	<p>제19조(출연금액의 확정 등) ① ----- ----- ----- 업무 원가 등 ----- ----- ----- .</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06호 2018. 10. 8. 공포)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8조의2(변론 후 재판부 구성의 변경) 변론을 연 후 재판장 또는 관여 대법관이 바뀐 경우에도 다시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장 또는 대법관도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형사소송절차에의 준용)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절차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여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여는 변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 ----- -----</p>
<p>〈신 설〉</p>	<p>제8조의2(변론 후 재판부 구성의 변경) 변론을 연 후 재판장 또는 관여 대법관이 바뀐 경우에도 다시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장 또는 대법관도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p>
<p>제9조(형사소송절차에의 준용)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절차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여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9조(형사소송절차에의 준용) ----- -----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는 ----- ----- -----</p>

◎ 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07호 2018. 10. 8. 공포)

법관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신규임용 판사의 연수) ① 대법원장은 신규임용 판사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수를 받는 판사는 연수기간 중 복무에 관하여 사법연수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사법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임용 판사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7조의3(신규임용 판사의 연수) ① 대법원장은 신규임용 판사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연수를 받는 판사는 연수기간 중 복무에 관하여 사법연수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p>③ 사법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임용 판사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p>

예 규

◎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62호 2018. 9. 18.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5. 나. (1) (다) 중 “금액을 아래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를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한다.”로 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Ⅱ. 법관에게 지급하는 수당</p> <p>1.~4. (생 략)</p> <p>5. 육아휴직수당(규칙 제10조의2)</p> <p>가. (생 략)</p> <p>나. 지급액</p> <p>(1) 총지급액</p> <p>(가) ~ (나) (생 략)</p> <p>(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법관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법관 호봉 기준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p> <p>○ 첫째 자녀: 150만원</p> <p>○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 200만원</p> <p>* (생 략)</p> <p>(라) (생 략)</p>	<p>Ⅱ. 법관에게 지급하는 수당</p> <p>1.~4. (현행과 같음)</p> <p>5. 육아휴직수당(규칙 제10조의2)</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지급액</p> <p>(1) 총지급액</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 ----- ----- ----- ----- -----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한다.</p> <p><삭 제></p> <p><삭 제></p> <p>* (현행과 같음)</p> <p>(라) (현행과 같음)</p>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63호 2018. 9. 18.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 목적 중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를 “제12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으로 한다.

II. 1. 중 “대상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가. “법 관”을 “법관”으로, “나. 일반직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을 “나.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 ※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하고, “다. 청원경찰”을 신설한다.

II. 2. 중 “자”를 “사람”으로, “적용대상 공무원이”를 “지급대상자가”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가. 부터 다.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 (2)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3)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4)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II. 2. 라.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바를 다음과 같이 하고, 마를 삭제한다.

바.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II. 3.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급에 관한 사항 통보

- (1)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2회 이상(다만, 법관의 경우 규칙 제5조제1항 단서에 의할 때는 1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그 시행계획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2) 통보내용

- (가) 지급대상 및 인원
- (나) 신청기간
- (다) 지급방법 및 지급일
- (라) 퇴직예정일 등 그 밖의 지급에 관한 사항
- (3) 통보기간

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통보

Ⅱ. 3. 나. (1) (가) 중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나) 중 “제3조 제1항”을 “제3조제1항”으로, “정년에 달하는 날을”을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을,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을”로,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정년이 달하는”을 “정년에 이른”으로, “6월사이”를 “6월 사이”로, “12월사이”를 “12월 사이”로 한다.

Ⅱ. 3. 나. (2) 중 “(가)정기명예퇴직”을 “(가) 정기명예퇴직”으로, “지급공고에서 정한”을 “각급 기관에 통보한”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로 한다.

Ⅱ. 3. 나. (2) (나) 중 첫 번째 〇의 “수시 명예퇴직”을 “수시명예퇴직”으로, “정기 명예퇴직신청기간”을 “정기명예퇴직 신청기간”으로, “공무원”을 “신청자”로, “소속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희망일로부터”를 “희망일부터”로, “이전에”를 “전에”로, “결정 함에”를 “결정함에”로 한다.

Ⅱ. 3. 나. (2) (나) 중 두 번째 〇의 “수시 명예퇴직 사유”를 “수시명예퇴직 사유”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7조의2제1항 에”를 “규칙 제7조의2제1항에”로,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Ⅱ. 3. 나. (2) (나) 중 세 번째 〇의 “수시 명예퇴직”을 “수시명예퇴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로 한다.

Ⅱ. 3. 나. (2) (다) 중 “수당지급신청기간”을 “수당지급 신청기간”으로 한다.

Ⅱ. 3. 다. 중 “심사기준”을 “결정기준”으로 한다.

Ⅱ. 3. 다. (1) 중 “수당지급 심사는”을 “수당지급은”으로, “수당지급신청기간중”을 “수당지급신청기간 중”으로, “자를”을 “사람을”으로, “심사대상에 포함 함”을 “대상에 포함함”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사망자”를 “사망한 사람”으로 한다.

Ⅱ. 3. 다. (2) 중 “법원공무원이”를 “사람이”로, “의하고”를 “따르고”로, (3) 중 “정기명예퇴직신청”을 “정기명예퇴직을 신청한”으로, “의함”을 “따름”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4) 중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는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수당지급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는 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으로, “당해계급”을 각각 “해당 계급”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으로 실근무경력이 오래된 자를”을 “실근무경력이 오래된 사람을”로, (5) 중 “제7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의함”을 “따름”으로, (6) 중 “제7조 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함.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함.

II. 3. 라. (1) 중 “제4조 에 의한 “별표1”에 정한 바에 의함”을 “제4조에 따라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름”으로, (2) 중 “수당지급액 계산에 있어서”를 “수당지급액을 계산할 때”로,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퇴직당시”를 “호봉제 적용대상자는 퇴직 당시”로, “연봉월액의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를 “연봉월액의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II. 3. 라. (3) (가) 중 “명예퇴직수당지급계획 공고시”를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 통보 시”로, “제3항 까지의 규정에”를 “제3항까지에”로, (나) 중 “계산시”를 “계산 시”로, “년도”를 “연도”로, ※ 중 “명예퇴직수당규정”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이전에”를 “전에”로, “자”를 “사람”으로, “의함”을 “따름”으로, - 중 “「법관 및 법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을 “규칙”으로, “퇴직당시”를 “퇴직 당시”로, * 중 “법관및 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제3조제4항 의”를 “규칙 제3조제4항의”로 하고, <수당지급액 산출예시>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2. 중 세 번째 -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 단, 5급(상당) 공무원은 연봉월액의 84퍼센트의 67.5퍼센트를 적용

II. 3. 마. (1)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의”로, “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수당지급대상자(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알려야 함”으로, (2) 중 “법원행정처 장”을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II. 3. 바. (1) 중 “수당의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명예퇴직수당은”으로, (2) 중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의 수당지급 수령권은 유족이 이를 승계함”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함”으로 하고, (3)은 삭제한다.

II. 3. 바. (2) 하단의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예시> 중 “명예퇴직신청 시점”을 각각 “명예퇴직 신청 시점”으로, “경력직퇴직당시의”를 “경력직 퇴직 당시의”로, “명예퇴직신청시점”을 “명예퇴직 신청 시점”으로, “정년잔여 기간”을 “정년잔여기간”으로 한다.

II. 3. 사.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규칙 제3조제4항에서 정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Ⅱ. 3. 아. (1) (가) 중 “자가 재직중의”를 “사람이 재직 중의”로, (나) 중 “자가”를 “사람이”로, “제129조 부터 제132조 까지에”를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로, (다) 중 “자가”를 “사람이”로, “제356조 에”를 “제356조에”로, (라) 중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를 “사람이 법 제2조”로, “제2조 에”를 “제2조에”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를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로, (마)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Ⅱ. 3. 아. (2) 중 “규칙 제9조의3 에 의한 “별표 2”에 정한 바에 의함”을 “규칙 제9조의3에 따라 별표 2에 정한 바에 따름”으로 한다.

Ⅱ. 3. 아. (3) (가) 및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이하 "지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며 이자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함.
- 지급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함.

※ 경찰청, 검찰청 등에 형벌사실의 확인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되었는지를 확인

(나)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 환수기관

-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 재임용한 각급 기관의 장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
- 환수금 산정 : 규칙 별표 2의 환수금 산정기준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적용된

월봉급액에 재임용 시까지의 경과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을 곱하여 산정

- 환수금 산정 시 적용되는 명예퇴직 후 경과기간 : 명예퇴직일의 다음 달부터 재임용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를 말함
- 환수절차 : 환수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가)를 준용함.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규칙 제9조의3, 별표 2)〉

II. 3. 아. (4) 중 “제74조의2제3항 제2호 에”를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로, “자가”를 “사람이”로, “자”를 “사람”으로,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별표2”를 “규칙 별표 2”로, “기환수된”을 “기존에 환수된”으로, “재임용후”를 “재임용 후”로, “자를”을 “사람을”로, “각급기관”을 “각급 기관”으로,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제9조의3제2항 에”를 “규칙 제9조의3제2항에”로 한다.

II. 3. 아. (5)를 (6)으로 하고, (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 각급 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II. 3. 아. (5) 하단의 〈명예퇴직 후 재임용에 따른 환수 및 정산방법 예시〉 중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의 68.54%의 반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를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의 반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로 한다.

III. 1. 중 “대상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III. 2. 중 “자”를 “사람”으로, “자와”를 “사람과”로, III. 3. 가. 중 “의하여”를 “따라”로, “범위내에서”를 “범위 내에서”로,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지급을”을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 지급을”로, 나. 중 “지급신청기간, 수당지급방법 및 수당지급일”을 “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로 한다.

III. 4. 가. 중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를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청원경찰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로, “등에 의하여”를 “등으로”로, “과

원이 된 날(이하 “과원이 된 날”이라 한다)”를 “과원이 된 날”로, “자진하여”를 “스스로”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Ⅲ. 4. 나. 중 “1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공무원이”를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으로,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를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다. 중 “신청대상자중”을 “신청대상자 중”으로, “1년이상 의”를 “1년 이상의”로, “실제공무원으로”를 “실제로”로, 라. 중 “지급공고에서 정한 신청기간내 에”를 “규칙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자진 퇴직수당 지급신청서”로 한다.

Ⅲ. 5. 중 “지급심사”를 “지급결정”으로, 가. 중 “심사대상”을 “결정기준”으로, “수당지급심사 는”을 “수당지급은”으로, “신청기간중에”를 “신청기간 중에”로, “자를”을 “사람을”로, “신청후 자의로”를 “신청 후 스스로”로, “신청대상에 포함 함”을 “대상에 포함함”으로, “사망당시”를 “사망 당시”로, 나. 중 “심사 및 결정”을 “결정방법”으로, (1) 중 “심사함”을 “결정함”으로, (2) 중 “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자순”을 “사람 순”으로, (3) 중 “범위안에서”를 “이내의 범 위에서”로 하고,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4) 법원행정처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검찰청, 경찰청 및 공 무원연금공단 등에 규칙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 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함.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 하여 확인함.

Ⅲ. 6. 중 “퇴직당시”를 “퇴직 당시”로, “6월분을 지급함”을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지급함”으로, “6월”을 “6개월”로, “상당”을 “상응”으로, “연봉월액의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를 “연봉월액의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67.5 퍼센트]”로 한다.

Ⅳ. 1. 중 “15일이내”를 “15일 이내”로, 2. 중 “명예퇴직, 조기퇴직 및 자진퇴직이 반드시 공무원 이 자진하여 퇴직을 원할 경우만”을 “반드시 명예퇴직, 조기퇴직 및 자진퇴직을 스스로 원할 경우에만”으로, 3. 중 “소속 공무원중”을 “소속기관의”로, 4. 중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자부터”를 “사람부터”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9조의2 의”를 “규칙 제9조의2의”로 한다.

Ⅳ. 5. 중 “2004.7.20.”을 “2004. 7. 20.”으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 칩」을 “규칙”으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지방 공무원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으로, “2004.7.20.”을 “2004. 7. 20.”으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7조의2 의 규정을”을

“규칙 제7조의2를”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제1항 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규칙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이전에”를 “전에”로, “자가”를 “사람이”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대법원규칙 제2077호) 제7조의2 의”를 “규칙(대법원규칙 제2077호) 제7조의2의”로 한다.

IV. 6. 중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을 “규칙”으로, “자”를 “사람”으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대법원규칙 제2077호) 제9조의4제2항 의 개정규정”을 “규칙(대법원규칙 제2077호) 제9조의4제2항의 개정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II. 2. (가)의 개정규정은 대법원규칙 제2795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의 시행일(2018년 6월 28일) 이후 징계처분이 요구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대법원규칙 제2795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의 시행일(2018년 6월 28일) 이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대법원규칙 제2795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의 시행일(2018년 6월 28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I. 목적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II. 명예퇴직수당

1. 대상공무원

가. 법 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

나. 일반직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신 설〉

2.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적용대상 공무원이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됨.

가.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다.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중인 자

개 정 안

I. 목적

----- 제12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

II. 명예퇴직수당

1. 지급대상

가. 법관 -----

나.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

※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됨.

다. 청원경찰

2. ----- 사람
지급대상자가 -----
----- 사람은 -----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2)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3)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4)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현행

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마. 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대상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사. 삭제(2006.06.22.제668호)

3.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가. 지급공고

(1) 법원행정처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2회 이상(다만, 법관의 경우 규칙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할 때는 1회)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그 시행계획을 법원공보에 공고하여야 함.

(2) 공고내용

(가) 수당지급대상 및 인원

(나)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정안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라. ----- 따라 -----

사람

<삭 제>

바.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사. 삭제(2006.06.22.제668호)

3.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가. 지급에 관한 사항 통보

(1)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2회 이상(다만, 법관의 경우 규칙 제5조제1항 단서에 의할 때는 1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그 시행계획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2) 통보내용

(가) 지급대상 및 인원

(나) 신청기간

현 행

(다) 수당지급방법 및 수당지급일
(라) 퇴직예정일 등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3) 공고기간

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공고

나. 지급신청

(1) 신청대상자

(가) 명예퇴직일 현재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나) 규칙 제3조 제1항의 정년퇴직일

법관 : 정년에 달하는 날을 정년퇴직일로 하되,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 정년이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

(2) 신청절차

(가) 정기명예퇴직의 신청

○ 수당을 지급 신청함에 있어서는 지급공고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개 정 안

(다) 지급방법 및 지급일
(라) 퇴직예정일 등 그 밖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통보기간

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통보

나. 지급신청

(1) 신청대상자

(가) -----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

(나) ----- 제3조제1항 -----

----- :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을, 8월에서 다음 해 1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을-----

일반직공무원 및 청원경찰 : 정년에 이른 ----- 6월 사이 ----- 12월 사이에 -----

(2) 신청절차

(가) 정기명예퇴직-----

○ ----- 각급기관에 통보한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현 행

(나) 수시명예퇴직의 신청

○ 수시 명예퇴직의 의의

- 정기 명예퇴직신청기간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공무원의 퇴직의사를 존중하고 소속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인정
- 수시명예퇴직의 경우에도 정기명예퇴직과 같이 퇴직 전에 명예퇴직 대상 여부를 결정 함에 따라 특별승진이 가능해짐

○ 수시 명예퇴직 사유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간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및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 (생략)

○ 수시 명예퇴직 신청방법 :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 희망일을 기재한 명예퇴직

개 정 안

(나) 수시명예퇴직의 신청

○ 수시명예퇴직

- 정기명예퇴직 신청기간 -----, 신청자 ----- 소속기관 -----
- -----, ----- 희망일부터 ----- 전에 ----- 결정함에 -----

○ 수시명예퇴직 사유

- 규칙 제7조의2제1항에 ----- 사람이 ----- 사람이 -----
- (현행과 같음)

○ 수시명예퇴직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현행

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수당지급신청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함.

다. 심사기준

(1) 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후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 함. 다만, 사망 당시에 근속기간과 정년잔여기간이 지급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이 경우 인사발령은 사망에 의한 퇴직으로 하되 차후 명예퇴직수당 결정사항 및 수당지급액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함.

· 명예퇴직 신청 후 사망자에 대한 특별승진은 불인정

(2) 정기명예퇴직을 신청한 법원공무원이 정기명예퇴직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수시명예퇴직자로 전환되어 수시명예퇴직 절차에 의하고, 따라서, 명예퇴직 신청일부터 퇴직하는 날 전 날까지 최소한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명예퇴직이 가능함.

(3) 법관의 경우는 현재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상반기 1회에 한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므로, 정기

개정안

(다) 수당지급 신청기간

다. 결정기준

(1) 수당지급은 수당지급 신청기간 중 사람을 대상에 포함함.

· 따른

· 사망한 사람

(2) 사람이

따르고,

(3) 정기

현행

명예퇴직 신청 법관이 정기명예퇴직 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수시명예퇴직 절차를 준용하지 않고 정기명예퇴직 절차에 의함. 다만, 퇴직 당시에 근속기간과 정년잔여기간이 지급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이 경우 인사발령은 의원면직에 의한 퇴직으로 하고, 차후 명예퇴직수당 결정사항 및 수당지급액을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하여야 함.

(4)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계급과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자를, 계급 재직기간 및 당해계급의 재직기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으로 실근무경력이 오래된 자를 우선으로 함.

(5) 규칙 제7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위직 공무원의 구별은 일반직 서열결정기준에 의함.

(6) 규칙 제7조 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공무원의 구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함.

(7) 삭제(2013.11.27. 제984호)

<신설>

개정안

명예퇴직을 신청한 -----

----- 따른. -----, -----

· ----- 따른

(4) 수당지급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는 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 -----

-----, -----

----- 해당 계급 -----

----- 사람을, -----

-- 해당 계급 -----

----- 실근무경력이 오래된 사람을 -----

(5) -----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 따른.

(6) -----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

(7) 삭제(2013.11.27. 제984호)

(8)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

현행

개정안

라. 지급액의 산정

- (1) 수당지급액은 실제퇴직일을 기준으로 규칙 제4조 에 의한"별표1"에 정한 바에 의한.
- (2)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퇴직당시(특별승진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함)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로 함.

(3) 근속기간 및 정년잔여기간의 계산

- (가) 근속기간 및 정년잔여기간은 명예 퇴직수당지급계획 공고시 정한 퇴직예정일의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속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 함.
- (나) 정년잔여기간 계산시 정년은 명예 퇴직하는 년도의 법률상 정년퇴직 연령을 기준으로 함.

금공단 등에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함.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함.

라. 지급액의 산정

- (1) -----
----- 제4조에 따라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름.
- (2) 수당지급액을 계산할 때 -----
-----, 호봉제 적용대상자는 퇴직 당시 -----

----- 연봉월액의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 ----- .

(3) 근속기간 및 정년잔여기간의 계산

- (가) ----- 명예 퇴직수당 지급계획 통보 시 -----

----- 제3항까지 -----

----- .
- (나) ----- 계산 시 -----
----- 연도 -----
----- .

현행

〈수당지급액 산출예시〉

1. 호봉제 적용대상자의 경우
 - 정년잔여기준 4년(정년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자)
 - 봉급표상 봉급액의 68%의 반액 × 48월(정년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 6년(정년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 봉급표상 봉급액의 68%의 반액
 - × $[60월 + \frac{72월(정년잔여월수) - 60월}{2}]$
 - 정년잔여기간 12년(정년잔여기간이 10년 초과인 자)
 - 봉급표상 봉급액의 68%의 반액
 - × $[60월 + \frac{120월(10년) - 60월}{2}]$
 2.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경우
 - 정년잔여기간이 4년(정년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자)
 - 연봉월액의 78%의 68.54%의 반액 × 48개월(정년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이 6년(정년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 연봉월액의 78%의 68.54%의 반액
 - × $[60월 + \frac{72월(정년잔여월수) - 60월}{2}]$
- ※ 비고 : 월봉급액이 13호봉을 초과하는 법관은 13호봉인 법관과 동일하고, 정년잔여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법관은 정년잔여기간이 7년인 법관과 동일함

※ 다만, 명예퇴직수당규정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2006. 1. 27. 이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의 정년잔여월수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함.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7조의2제1항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경력직공무원에서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빼 기간, ②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빼 기간을 기준으로 각 산정함(이 경우 공제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개정안

〈수당지급액 산출예시〉

1. 호봉제 적용대상자의 경우
 - 정년잔여기준 4년(정년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 봉급표상 봉급액의 68%의 반액 × 48월(정년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 6년(정년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 봉급표상 봉급액의 68%의 반액
 - × $[60월 + \frac{72월(정년잔여월수) - 60월}{2}]$
 - 정년잔여기간 12년(정년잔여기간이 10년 초과인 사람)
 - 봉급표상 봉급액의 68%의 반액
 - × $[60월 + \frac{120월(10년) - 60월}{2}]$
 2.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경우
 - 정년잔여기간이 4년(정년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 연봉월액의 78%의 68.54%의 반액 × 48개월(정년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이 6년(정년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 연봉월액의 78%의 68.54%의 반액
 - × $[60월 + \frac{72월(정년잔여월수) - 60월}{2}]$
- 단, 5급(상당) 공무원은 연봉월액의 84퍼센트의 67.5퍼센트를 적용
- ※ 비고 : 월봉급액이 13호봉을 초과하는 법관은 13호봉인 법관과 동일하고, 정년잔여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법관은 정년잔여기간이 7년인 법관과 동일함

※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 따라 ----- 전에 ----- 사람 ----- 따름.

- 규칙 ----- ① ----- 퇴직 당시 ----- , ② -----

현 행

* 아울러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퇴직 당시에도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제3조제4항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마. 지급절차

(1)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의 결정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신청서류 기타 수당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2) 수당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장이 지급할 수 있음.

바. 수령권자

(1) 수당의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2)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의 수당지급 수령권은 유족이 이를 승계함.

(3)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의 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함.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예시>

개 정 안

* -----
----- 규칙 제3조제4항의

----- .

마. 지급절차

(1) ----- 제8조에
따라, ----- ,
----- ,
----- 그 밖의 -----
----- 수당지급대상자(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알려야 함.

(2) -----

----- 법원행정처장 -----
----- .

바. 수령권자

(1) 명예퇴직수당은 -----
----- .

(2)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함.

<삭 제>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예시>

현행

사례 A : 일반직 → 별정직 → (최종퇴직)

‘11년 1월, A법원 소속 일반직 6급(통산 23년 근속, 정년잔여기간 4년 5개월) → ‘11년 1월, B법원 소속 별정직 5급 임용(일반직 퇴직과 동시에 별정직 채용) → ‘11년 10월, B법원에서 별정직으로 퇴직

- 명예퇴직신청 시점 : ‘11년 10월 / ○ 명예퇴직신청 대상기관 : A법원
 -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
 - 월봉급액 : 경력직으로 퇴직한 때(‘11년 1월) 기준
 - 정년잔여기간 : 경력직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
- 특수경력직공무원 근무기간(4년 5개월-10개월= 3년 7개월)

사례 B : 일반직 → 별정직 → 일반직 → (최종퇴직)

‘09년 2월, A법원 소속 일반직 6급(통산 23년 근속, 정년잔여기간 4년 5개월) → ‘09년 2월, B법원 소속 별정직 5급 임용(일반직 퇴직과 동시에 별정직 임용) → ‘10년 1월, B법원 일반직 5급 임용(별정직 퇴직과 동시에 일반직 임용) → ‘11년 2월, B법원에서 일반직으로 퇴직(정년잔여기간 2년 5개월)

- 명예퇴직신청 시점 : ‘11년 2월 / ○ 명예퇴직신청 대상기관 : B법원
-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
 - 월봉급액 : 경력직으로 퇴직한 때(‘11년 2월) 기준
 - 정년잔여기간 : 경력직 퇴직 시점에서의 정년잔여기간(2년 5개월)

사례 C : 일반직 → (신분중단) → 별정직 → (최종퇴직)

‘08년 7월, A법원 일반직 6급(통산 23년 근속, 정년잔여기간 5년) → ‘08년 7월, 의원면직(명예퇴직수당 불수령) → ‘09년 1월, B법원 별정직 5급 임용→ ‘11년 7월, B법원에서 별정직으로 퇴직

- 명예퇴직신청시점 : ‘11년 7월 / ○ 명예퇴직 신청 대상기관 : A 법원
 -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
 - 월봉급액 : 경력직으로 퇴직한 때(‘08년 7월) 기준
 - 정년잔여기간 : 경력직퇴직당시의 정년잔여 기간
- 최종 별정직 퇴직까지의 기간(60개월-36개월=24개월)

개정안

사례 A : 일반직 → 별정직 → (최종퇴직)

‘11년 1월, A법원 소속 일반직 6급(통산 23년 근속, 정년잔여기간 4년 5개월) → ‘11년 1월, B법원 소속 별정직 5급 임용(일반직 퇴직과 동시에 별정직 채용) → ‘11년 10월, B법원에서 별정직으로 퇴직

- 명예퇴직 신청 시점 : ‘11년 10월 / ○ 명예퇴직신청 대상기관 : A법원
 -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
 - 월봉급액 : 경력직으로 퇴직한 때(‘11년 1월) 기준
 - 정년잔여기간 : 경력직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
- 특수경력직공무원 근무기간(4년 5개월-10개월= 3년 7개월)

사례 B : 일반직 → 별정직 → 일반직 → (최종퇴직)

‘09년 2월, A법원 소속 일반직 6급(통산 23년 근속, 정년잔여기간 4년 5개월) → ‘09년 2월, B법원 소속 별정직 5급 임용(일반직 퇴직과 동시에 별정직 임용) → ‘10년 1월, B법원 일반직 5급 임용(별정직 퇴직과 동시에 일반직 임용) → ‘11년 2월, B법원에서 일반직으로 퇴직(정년잔여기간 2년 5개월)

- 명예퇴직 신청 시점 : ‘11년 2월 / ○ 명예퇴직신청 대상기관 : B법원
-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
 - 월봉급액 : 경력직으로 퇴직한 때(‘11년 2월) 기준
 - 정년잔여기간 : 경력직 퇴직 시점에서의 정년잔여기간(2년 5개월)

사례 C : 일반직 → (신분중단) → 별정직 → (최종퇴직)

‘08년 7월, A법원 일반직 6급(통산 23년 근속, 정년잔여기간 5년) → ‘08년 7월, 의원면직(명예퇴직수당 불수령) → ‘09년 1월, B법원 별정직 5급 임용→ ‘11년 7월, B법원에서 별정직으로 퇴직

- 명예퇴직 신청 시점 : ‘11년 7월 / ○ 명예퇴직 신청 대상기관 : A 법원
 -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
 - 월봉급액 : 경력직으로 퇴직한 때(‘08년 7월) 기준
 - 정년잔여기간 : 경력직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
- 최종 별정직 퇴직까지의 기간(60개월-36개월=24개월)

현행

사.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규칙 제3조 제4항 및 동예규에서 정한 명예퇴직수당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아.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1) 환수대상

- (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 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다)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개정안

사.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규칙 제3조제4항에서 정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아.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1) 환수대상

- (가) ----- 사람이 재직 중의 -----
- (나) ----- 사람이 -----
-----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에 -----
- (다) ----- 사람이 -----
----- 제356조에 -----
- (라) ----- 사람이 -----
----- 법 제2조 -----
----- 제2조에 -----
-----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

현 행

(마)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인 자가 지급받은 경우

(2) 환수금 : 규칙 제9조의3 에 의한 "별표 2"에 정한 바에 의함.

(3) 환수절차

(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이하 "지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함.

-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함.

· 이자 계산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 이자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

-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는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의2제4항 에 따른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개 정 안

(마) -----
----- 사람이 -----

(2) ----- : 규칙 제9조의3에 따라 별표 2에 정한 바에 따름.

(3) 환수절차

(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이하 "지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며 이자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함.

현 행

- 지급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함.
- ※ 경찰청, 검찰청 등에 형벌사실의 확인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되었는지를 확인
- (나) 법 제74조의2제3항 제2호 에 해당 하는 경우
 - 환수기관 : 명예퇴직한 자를 재임용 하고자 하는 각급기관의 장
 - 환수금 산정 :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 퇴직수당등지급규칙 별표2의 환수금 산정기준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적용된 월봉급액에 재임용 시까지의 경과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을 곱하여 산정
- 환수금 산정 시 적용되는 명예퇴직 후 경과기간 : 명예퇴직일의 다음 달부터 재임용되는 날이 속하는 달 까지의 월수를 말함
- 환수절차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재임용하고자 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재임용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 고지서를 받은 자가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4항 에

개 정 안

- 지급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함.
- ※ 경찰청, 검찰청 등에 형벌사실의 확인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되었는지를 확인
- (나)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 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 환수기관
 -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 재임용한 각급 기관의 장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
 - 환수금 산정 : 규칙 별표 2의 환수금 산정기준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적용된 월봉급액에 재임용 시까지의 경과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을 곱하여 산정
 - 환수금 산정 시 적용되는 명예퇴직 후 경과기간 : 명예퇴직일의 다음 달부터 재임용되는 날이 속하는 달 까지의 월수를 말함
 - 환수절차 : 환수기관의 장은 지체 없

현행

다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환수금 연체 시 적용이율 :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제9조의4 제2항에 정한 이율을 적용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규칙 9조의3, 별표2)〉

구분	적용대상	산정기준
환수금	1.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2. 법 제74조의2 제3항제2호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월수/2)}
	3. 법 제74조의2 제3항제3호 해당자	가.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
정산금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임용 후의 근무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명예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보다 짧은 자	재임용 시 환수금액(이자 제외)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월수/2)}

개정안

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가)를 준용함.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규칙 9조의3, 별표 2)〉

구분	적용대상	산정기준
환수금	1.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2. 법 제74조의2 제3항제2호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월수/2)}
	3. 법 제74조의2 제3항제3호 해당자	가.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
정산금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임용 후의 근무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명예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보다 짧은 자	재임용 시 환수금액(이자 제외)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월수/2)}

현 행

- (4) 정산금 지급
 - 법 제74조의2제3항 제2호 에 해당하
여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
 - (생 략)
 - *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
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정산금 산정 :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
퇴직수당등지급규칙 별표2의 정산금
산정기준에 따라 기환수된 명예퇴직
수당에서 재임용후 근무한 기간만큼
의 명예퇴직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정산지급 절차 : 명예퇴직한 자를 재
임용한 각급기관의 장은 법관및법원
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제9
조의3제2항 에 따라 산정한 정산금
을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
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5) <신 설>

개 정 안

- (4) 정산금 지급
 - ---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
----- 사람이 -----

 - (현행과 같음)
 - * ----- , ----- 사람

 - ----- : 규칙 별표 2 -----

----- 기준에 환수된 -----
----- 재임용 후 -----

 - ----- : ----- 사람을 ---
----- 각급 기관 -----
----- 규칙 제9조의
3제2항에 -----

(5)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 각급 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
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
항에 따른 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
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
수 및 정산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현행

〈명예퇴직 후 재임용에 따른 환수 및 정산방법 예시〉

- 정년잔여기간이 7년인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재임용되는 경우를 가정
-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 7,200만원

- 정년잔여기간이 7년인 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 7,200만원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의 68.54%의 반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 7200만원 = 100만원 × 60(첫 5년=60월) + 100만원 × 12(5년 경과한 나머지 2년(24월)의 반 = 12월)

- ② 명예퇴직 3년 후 재임용 시 환수금 : 3,600만원

- 3,600만원 = 7,200만원 - 100만원 × 36월 ⇒ 국고여입 : 3,600만원
- 환수금 =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월수/2)}
- * 명예퇴직 후 5년 이내에 있는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명퇴수당 지급에 비례하여 근무기간을 반영하고, 5년 초과한 기간은 근무기간의 1/2을 반영하여 환수함. 즉 명예퇴직수당지급액과 동일한 방식 적용

- ③ 명예퇴직 7년 이상 경과 후 재임용 시 환수금 : 없음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정년잔여기간 7년)을 경과하여 재임용되었으므로 환수대상이 아님

- ④ 명예퇴직 3년 후 재임용되어 3년 근무 후 퇴직 시 정산지급액 : 600만원

- 600만원 = 3,600만원 - 100만원 × 30월(24월+12월 × 1/2)
- 정산금 = 재임용 시 환수금액(이자 제외)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월수/2)}

- ⑤ 명예퇴직 3년 후 재임용되어 4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정산지급액 : 없음

- 환수대상기간보다 더 오래 근무하였으므로 정산지급대상이 아님

Ⅲ.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1. 대상공무원

- 가. (생략)
- 나. (생략)

개정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6) (현행 제(5)와 같음)

〈명예퇴직 후 재임용에 따른 환수 및 정산방법 예시〉

- 정년잔여기간이 7년인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재임용되는 경우를 가정
-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 7,200만원

- 정년잔여기간이 7년인 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 7,200만원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의 반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 7200만원 = 100만원 × 60(첫 5년=60월) + 100만원 × 12(5년 경과한 나머지 2년(24월)의 반 = 12월)

- ② 명예퇴직 3년 후 재임용 시 환수금 : 3,600만원

- 3,600만원 = 7,200만원 - 100만원 × 36월 ⇒ 국고여입 : 3,600만원
- 환수금 =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월수/2)}
- * 명예퇴직 후 5년 이내에 있는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명퇴수당 지급에 비례하여 근무기간을 반영하고, 5년 초과한 기간은 근무기간의 1/2을 반영하여 환수함. 즉 명예퇴직수당지급액과 동일한 방식 적용

- ③ 명예퇴직 7년 이상 경과 후 재임용 시 환수금 : 없음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정년잔여기간 7년)을 경과하여 재임용되었으므로 환수대상이 아님

- ④ 명예퇴직 3년 후 재임용되어 3년 근무 후 퇴직 시 정산지급액 : 600만원

- 600만원 = 3,600만원 - 100만원 × 30월(24월+12월 × 1/2)
- 정산금 = 재임용 시 환수금액(이자 제외)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월수/2)}

- ⑤ 명예퇴직 3년 후 재임용되어 4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정산지급액 : 없음

- 환수대상기간보다 더 오래 근무하였으므로 정산지급대상이 아님

Ⅲ.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1. 지급대상

- 가. (현행과 같음)
- 나. (현행과 같음)

현행

- 2.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와 동일함
- 3.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계획의 수립
 - 가. 법원행정처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및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수당지급방법 및 수당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지급대상 및 인원은 발생한 과원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은 직(계)급별로 구분하고, 자진퇴직수당은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상당계급별로 구분함.
- 4. 지급신청
 - 가.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는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이하 "과원이 된 날"이라 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함.

개정안

- 2. ----- 사람

사람과 -----
- 3.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계획의 수립
 - 가. -----
 ----- 따라 -----
 ----- 범위 내에서 -----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 지급을 -----
 ----- .
 - 나. -----
 ----- , 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 -----

 ----- , -----
 ----- .
- 4. 지급신청
 - 가. -----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청원경찰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
 ----- 등으로 -----

현행

나. 자진퇴직수당 신청대상자는 1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과원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
로 함.

다. 조기퇴직수당등의 신청대상자중 근속
기간 1년이상 의 계산은 실제공무원으
로 재직한 기간(정직, 휴직,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으로 함.

라. 조기퇴직수당등을 지급신청함에 있어
서는 지급공고에서 정한 신청기간내
에 조기퇴직수당·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자
진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
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5. 지급심사

가. 심사대상

수당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
상으로 하며, 신청후 자의로 퇴직하거
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 함. 다만, 퇴직 또는 사망당시에
근속기간이 지급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나. 지급대상자 심사 및 결정

개정안

----- 과원이 된 날-----
----- 스스로 ----- 사람
으로----- .

나. ----- 1년 이상
-----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
는-----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 ----- .

다. ----- 신청대상자 중 -----
---- 1년 이상의 ----- 실제로

----- .

라. -----
----- 규칙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 .

5. 지급결정

가. 결정기준

수당지급은-----
신청기간 중에 ----- 사람을----
----- , 신청 후 스스로-----
----- 대상에
포함함. ----- , 사망 당시 --
----- .

나. 지급대상자 결정방법

현 행

- (1)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는 과원이 된 직(계)급별, 상당계급 등 별로 심사합을 원칙으로 함.
- (2) 동일 직(계)급 및 상당계급 등의 과원에 비하여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해당 직(계)급 및 상당계급 등의 장기 재직자, 연금법상 재직기간, 실근무경력이 오래된 자순으로 선발함.
- (3) 다만, 조기퇴직수당의 경우 일부 직(계)급에 있어서 과원에 비하여 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 직(계)급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음.

<예시>

지급대상	계획인원 (과원)	신청인원	결정인원	비 고
법 원 사 무 관	3 명	3 명	3 명	법 원 주 사 보 신청자가 계획인원보다 2명이 부족하여 동인원을 법원 주 사 에서 추가 선발
법 원 주 사	4 명	8 명	6 명	
법 원 주 사 보	5 명	3 명	3 명	

<신 설>

개 정 안

- (1) -----

결정합----- .
- (2) -----

-----, 공무원연금법-----, -----
----- 사람 순----- .
- (3) -----, -----

----- 이내의 범위에서 -----
----- .

<예시>

지급대상	계획인원 (과원)	신청인원	결정인원	비 고
법 원 사 무 관	3 명	3 명	3 명	법 원 주 사 보 신청자가 계획인원보다 2명이 부족하여 동인원을 법원 주 사 에서 추가 선발
법 원 주 사	4 명	8 명	6 명	
법 원 주 사 보	5 명	3 명	3 명	

- (4) 법원행정처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규칙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함.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함.

현행

6. 지급액: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을 지급함.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로 함

7. 지급절차 및 수령권자:

명예퇴직수당의 경우에 준함.

IV. 기타사항

1.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2.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 조기퇴직 및 자진퇴직이 반드시 공무원이 자진하여 퇴직을 원할 경우만 신청하도록 운영하여야 함.

3.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임식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별로 퇴임식을 거행하여야 함.

4. 명예퇴직수당 환수 적용시점

-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또는 대상이 아닌 자가

개정안

6. 지급액:

퇴직 당시 -----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지급함. -----
----- 6개월 -----
----- 상응 ----- .

※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 [5급(상당)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로 함

7. 지급절차 및 수령권자:

명예퇴직수당의 경우에 준함.

IV. 기타사항

1. -----

----- 15일 이내 -----
----- .

2. ----- 반드시 명예퇴직, 조기퇴직 및 자진퇴직을 스스로 원할 경우에만 -----
----- .

3. ----- 소속기관의 -----
----- .

4. 명예퇴직수당 환수 적용시점

- -----

----- 사람이

현 행

지급받은 경우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는 2002년 7월 1일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부터 적용함.

- 명예퇴직한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의 환수는 명예퇴직한 자가 2002년 7월 13일 이후 「법관 및 법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9조의2 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부터 적용함.

5.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 2004. 7. 20. 자로 공포·시행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대법원규칙 제1897호) 전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로서 2004. 7. 20. 현재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7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함.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제1항 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2007. 3. 이전에 퇴직한 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특수경력

개 정 안

----- 사람부터 ----- .

- ----- 사람이 -----
----- 사람이
----- 규칙 제9조의2의

----- .

5.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 2004. 7. 20. ----- 규칙
-----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
----- 2004. 7. 20.

----- 규칙 제7조의2를 ----- .

- 규칙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

----- 전에 -----
사람이 -----

현행

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재임용될 경우에는 2007. 3. 29.자로 공포·시행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대법원규칙 제2077호) 제7조의2 의 개정규정을 적용함.

- 6. 명예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 2007. 3. 29.자로 공포·시행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대법원규칙 제2077호) 제9조의2제2호 , 제9조의3 , 제9조의4제3항 및 제4항 의 개정규정은 2007. 3. 이후에 재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함.
 - 2007. 3. 29.자로 공포·시행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대법원규칙 제2077호) 제9조의4제2항 의 개정규정은 2007. 3.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는 환수금분부터 적용함.

개정안

----- 규칙(대법원규칙 제2077호) 제7조의2의 -----

- 6. 명예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 ----- 규칙 -----

----- 사람 ----- .
 - ----- 규칙 -----
(대법원규칙 제2077호) 제9조의4제2항
의 개정 규정-----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기재란	① 소속		③ 구 분	<input type="checkbox"/> 법 관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청원경찰	④ 직(계)급·직무군 (호봉)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⑤ 성명 한글 한자		⑥ 생년월일	⑦ 주소		□□□□□□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선고형:)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선고형:)					
⑫ 정년 구분 [] 연령정년 [] 임기만료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임기제 [] 별정직	년 월	확인	인사담당 (서명 또는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급대상기간)		년 개월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소속 기관 기재란	⑰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선고형:)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선고형:)				
	확인	인사담당 (서명 또는 인)	연금담당 (서명 또는 인)	감사담당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 1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송부합니다.

소속기관의 장

년 월 일
직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연금담당자 및 감사담당자가 직접 적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 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
7. ⑱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⑲란은 연령정년 및 임기만료에 따라 해당 정년을 기재(세 또는 년)
9. ⑳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㉑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2. 직 위:

3. 직 급: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용됩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정기·[]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속		공무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법관 <input type="checkbox"/> 일반직(임제 제외) <input type="checkbox"/> 청원경찰 <input type="checkbox"/> 별정직		직급·직무군 또는 상당 계급 (호봉)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소 □□□□□□				
전화번호 (자택)		최초 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개월
수당 청구액			산출내용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2. 조기·자진 퇴직원(「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별지 제4호서식) 1부
------	--

확인	인사담당	(서명 또는 인)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조기퇴직수당과 자진퇴직수당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야 하며,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 조기 퇴직원
[] 자진

1. 소 속:

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 []자진) 퇴직하려고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자 명단(년 상·하반기)

명퇴 시 소속 기관	직종	직급 (계급)	성명	생년 월일	명 예 퇴 직 일	정 년 예 정 일	명 예 퇴 직 수 당 액 (원)	환 수 사 유	환 수 금 액	재임용 기관				비 고
										기 관 명	직 종	직 급 (계 급)	재 임 용 일	

※ 환수사유 및 환수금액

- 1호 :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호의2 :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호의3 :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1호, 1호의2, 1호의3의 사유일 경우 전액환수
- 2호 :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명퇴수당지급액 - 명퇴 후 재임용까지의 경과기간에 해당되는 명퇴수당지급액}을 환수
- 3호 : 명예퇴직수당을 초과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 초과지급분 또는 전액환수(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 환수금 산정 시 월봉금액 적용기준은 명예퇴직당시의 월봉금액 산정기준에 따름

※ 비고란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국가,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지방이라고 기재할 것

※ MS-Excel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64호 2018. 10. 2. 결재)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관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구성”을 “법관 연구회(이하 “법관 연구회”라 한다)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회(이하 “지원 대상 연구회”라 한다)의 지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연구회의 지정 및 취소) ① 법관 연구회는 아래 각 호 및 이 예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원 대상 연구회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회원이 50인 이상인 연구회
2. 회칙 제정 및 회장 선출을 마친 날 및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지침」 제8조에 따른 코트넷 커뮤니티 개설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연구회
- ② 제1항의 지정을 요청한 법관 연구회는 연구회의 명칭, 연구대상인 전문법률분야, 회칙, 기존 활동성과, 회원현황, 향후 활동계획 및 소요예산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법관 연구회의 설립목적, 예산 사정, 활동성과와 활동계획 등을 참작하여 지원 대상 연구회로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특정 법관 연구회를 지원 대상 연구회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법원행정처장은 지원 대상 연구회가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연구활동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경비 지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3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연구회”를 “지원 대상 연구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회원가입을 원하는 자”를 “지원 대상 연구회의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항 후단 중 “연구회”를 각각 “지원 대상 연구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연구회”를 “지원 대상 연구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구회”를 각각 “지원 대상 연구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연구회”를 “지원 대상 연구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 연구회”를 “그 밖에 지원 대상 연구회”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항 후단 중 “연구회”를 각각 “지원 대상 연구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연구회”를 “지원 대상 연구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회”를 “지원 대상 연구회”로, “1월 15일까지”를 “1월 31일까지”로, “및 당해”를 “자료물의 법원 내 공유 정도 및 해당”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원)”을 “(평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연구회성과 평가위원회”를 “법원행정처에 지원 대상 연구회 성과평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 중 “연구회”를 각각 “지원 대상 연구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 중 “자료물 평가”를 각각 “자료물 평가, 공유 정도 및 실무기여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법정책실 판사”를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소속 판사”로, “기타”를 “그 밖에”로, “지정하는 자”를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연구회”를 “지원 대상 연구회”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있고, 법원 네트워크 등 전산 자원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운영) ① 지원 대상 연구회는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지원 대상 연구회의 임원, 총회, 분과 및 폐쇄 커뮤니티 운영에 관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허가를 받은 연구회에 관한 특례) 이 예규 시행 당시 개정 전 예규에 따른 설립 허가를 받은 연구회는 이 예규 제2조제3항의 지원 대상 연구회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전문법률분야의 연구를 위한 법관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회의 설립허가) ① 연구회는 회원 3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 ② 연구회가 이 예규에서 정하는 제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 설립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설립목적과 예산사정 등을 참작하여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안

제1조(목적) -----
----- 법관 연구회(이하 “법관 연구회”라 한다)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회(이하 “지원 대상 연구회”라 한다)의 지정 -----

제2조(지원 대상 연구회의 지정 및 취소) ① 법관 연구회는 아래 각 호 및 이 예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원 대상 연구회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1. 회원이 50인 이상인 연구회
- 2. 회칙 제정 및 회장 선출을 마친 날 및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지침」 제8조에 따른 코트넷 커뮤니티 개설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연구회
- ② 제1항의 지정을 요청한 법관 연구회는 연구회의 명칭, 연구대상인 전문법률분야, 회칙, 기존 활동성과, 회원현황, 향후 활동계획 및 소요예산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법관 연구회의 설립목적, 예산사정, 활동성과와 활동계획 등을 참작하여 지원 대상 연구회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특정 법관 연구회를 지원 대상 연구회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

제3조(회원) ① 연구회의 회원은 법관으로 하되, 회장은 법원공무원을 준회원으로 가입시킬수 있다.

② 법관은 2개 이상의 연구회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그 예외가 되는 연구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재판부 소속 법관은 관련 연구회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4조(가입 및 탈퇴) ① 회원가입을 원하는 자는 회장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메일의 방법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연구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장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메일의 방법으로 탈퇴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구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탈퇴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5조(임원) ① 연구회에는 회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② ~ ③ (생략)

개정안

④ 법원행정처장은 지원 대상 연구회가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연구 활동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경비 지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3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회원) ① 지원 대상 연구회

<삭제>

<삭제>

제4조(가입 및 탈퇴) ① 지원 대상 연구회 회원가입 사람은 사람에게

② 지원 대상 연구회 사람에게

날부터

제5조(임원) ① 지원 대상 연구회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④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총회) ① 연구회는 연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총회에서는 회장의 선출 및 결산보고 기타 연구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④ (생략)

제7조(분과 및 폐쇄 커뮤니티) ① 연구회는 세부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고, 회장은 각 분과마다 분과별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폐쇄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회는 간사 또는 분과별 간사의 허가를 받은 회원에 한하여 폐쇄 커뮤니티에 자료를 게시하거나 게시된 자료를 열람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활동) ①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② 연구회 간사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1년 동안의 활동성과, 회원현황, 결산현황, 및 당해 연도의 활동계획, 소요 예산을 수집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안

④ ----- 지원 대상 연구회 -----
-----, ----- 지원 대상 연구회 ----- .

제6조(총회) ① 지원 대상 연구회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그 밖에 지원 대상 연구회 -----
-----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분과 및 폐쇄 커뮤니티) ① 지원 대상 연구회 -----

----- .

② 지원 대상 연구회 -----
-----, ----- 지원 대상 연구회 -----

----- .

제8조(활동) ① 지원 대상 연구회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지원 대상 연구회 ----- 1월 31일까지 -----

----- 자료물의 법원 내 공유 정도 및 해당 -----
----- .

현행

제9조(지원) ① 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연구회성과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정보화심의관, 기획제1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판사, 사법정책실 판사,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의 평가에 관한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을 참작하여 각 연구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법원 네트워크 등 전산자원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생략)

제10조(기타) 각 연구회는 이 예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회를 통하여 해당 연구회의 운영 등에 관한 회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안

제9조(평가위원회) ① ----- 지원 대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공유 정도 및 실무기여도 ----- 법원행정처에 지원 대상 연구회 성과평가위원회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소속 ----- 그 밖에 ----- 사람으로 한다.

④ ----- 지원 대상 연구회 ----- 자료물 평가, 공유 정도 및 실무기여도 ----- .

⑤ ----- 지원 대상 연구회 ----- 범위에서 ----- 있
다.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 ① 지원 대상 연구회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지원 대상 연구회의 임원, 총회, 분과 및 폐쇄 커뮤니티 운영에 관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회칙으로 달리 정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법령 목록 (2018. 9. 16. ~ 9. 30.)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575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8. 9. 18	19342	6
법률제15752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	"	8
법률제15753호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	"	"	8
법률제15754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
법률제15755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	"	10
법률제15756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	"	"	11
법률제15757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	"	"	12
법률제15758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3
법률제15759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4
법률제15760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15
법률제15761호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	"	15
법률제15762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	16
법률제1576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17
법률제1576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17
법률제15765호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	"	"	18
법률제15766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9
법률제15767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3
법률제15768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24
법률제1576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25
법률제15770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	26
법률제15771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7
법률제15772호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28
법률제15773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9

법률제15774호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18. 9. 18	19342	30
법률제15775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	"	31
법률제15776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1
법률제15777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2
법률제15778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33
법률제15779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	"	38
법률제15780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40
법률제1578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42
법률제15782호	주택도시보증법 일부개정법률	"	"	44
법률제15783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	"	45
법률제1578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7

【조약】

조약제2396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2018. 9. 28	19347	6
----------	--	-------------	-------	---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9162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9. 18	19342	48
대통령령제2916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9
대통령령제29164호	위수령 폐지령	"	"	65
대통령령제29165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65
대통령령제2916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71
대통령령제29167호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	"	"	74
대통령령제29168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4
대통령령제29169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	"	76
대통령령제29170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령	"	"	77
대통령령제29171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8
대통령령제29172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0
대통령령제2917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3

대통령령제29174호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 9. 18	19342	96
대통령령제29175호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0
대통령령제29176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4
대통령령제29177호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6
대통령령제29178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7
대통령령제29179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4
대통령령제29180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	115
대통령령제2918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	"	155
대통령령제2918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8
대통령령제2918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9. 28	19347	14
대통령령제29184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29185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
대통령령제29186호	전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
대통령령제29187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2
대통령령제29188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3
대통령령제29189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4
대통령령제29190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7
대통령령제2919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8
대통령령제29192호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	"	29
대통령령제2919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3
대통령령제29194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간선 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	"	34
대통령령제29195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7
대통령령제291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0
대통령령제29197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7
대통령령제29198호	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7
대통령령제29199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8
대통령령제29200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2
대통령령제2920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4
대통령령제29202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6

【총리령】

총리령제1489호	공무원연급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2018. 9. 21	19345	5
총리령제1490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	7
총리령제149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9. 28	19347	57

【부령】

국방부령제968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	2018. 9. 17	19341	4
기획재정부령제691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9. 18	19342	235
행정안전부령제7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39
산업통상자원부령제30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58
국토교통부령제54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258
행정안전부령제7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9. 19	19343	3
기획재정부령제692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9. 20	19344	4
국방부령제969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보건복지부령제592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법무부령제93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9. 21	19345	26
농림축산식품부령제33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5
농림축산식품부령제336호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폐지령	"	"	88
국토교통부령제545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8
보건복지부령제59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018. 9. 27	19346	4
보건복지부령제596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
기획재정부령제69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9. 28	19347	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6호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1
외교부령제57호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8
외교부령제58호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91
통일부령제100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2
국방부령제970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3
행정안전부령제7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4
보건복지부령제5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6

보건복지부령제59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2018. 9. 28	19347	119
국토교통부령제54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0

인사

인사발령 법 제151호

2018. 9. 3.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기영(金基穎)	대법원 근무를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준현(張準顯)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2018. 9. 4.자) 끝.

인사발령 법 제153호

2018. 9. 5.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영진	대법원 근무를 명함
			(2018. 9. 7.자) 끝.

인사발령 법 제155호

2018. 9. 1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문광섭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허용석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9. 14.부터 2019. 2. 13.까지 휴직을 명함
			(2018. 9. 14.자) 끝.

인사발령 법 제156호

2018. 9. 1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원수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 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9. 19.부터 2019. 9. 18.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유현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8. 9. 12.부터 2019. 2. 22.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2.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유현정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8. 9. 12.자) 끝.

인사발령 법 제157호 2018. 9. 13.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종석	대법원 근무를 명함
			(2018. 9. 14.자) 끝.

인사발령 법 제158호 2018. 9. 13.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장			
	대전지방법원장	김필곤	판사에 연임함
			(2018. 10.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59호

2018. 9. 17.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은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10. 19.부터 2019. 2. 24.까지 휴직을 명함
	"	송현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10. 15.부터 2019. 2. 24.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박혜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10. 1.부터 2018. 12. 28.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허서운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10. 18.부터 2019. 1. 17.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인해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10. 22.부터 2018. 11. 30.까지 휴직을 명함
2. 복 직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신영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8. 10. 5.자)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원지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8. 10. 20.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8. 10. 20.부터 2019. 9. 6.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임효량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8. 10.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61호

2018. 9. 2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 법 원	이은애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8. 9. 21.자) 끝.

공지사항

◎ 9월 신착 법률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 대법원 열람실에 9월분 법률도서(26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43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 법률상담사례 / 장중운	진원사	2018	
권리를 위한 투쟁 / Jhering, Rudolf von	책세상	2018	
법과 사회: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 홍완식	법문사	2018	
재판으로 본 세계사: 판사의 눈으로 가려 뽑은 울림 있는 판결 / 박형남	Humanist	2018	
후회는 없다: 변정일 회고록 / 변정일	물레	2018	
Ethical lawyering: Legal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in the practice of law / Hayden, Paul T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Global Lawyering Skills / Moylan, Mary-Beth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Legal Writing and Analysis in a Nutshell / Bahrych, Lynn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Legal Writing and Legal Skills for Foreign LL.M. Students: ESL Workbook / Lundquist, Karen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Legal Writing and Legal Skills for Foreign LL.M. Students: Main assignment file book / Lundquist, Karen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Rechtstheorie: ein Studienbuch / Vesting, Thomas	C.H.Beck	2015	
Römisches Privatrecht: ein Studienbuch / Kaser, Max	C.H.Beck	2017	
Scholarly Writing for Law Students: Seminar Papers, Law Review Notes and Law Review Competition Papers / Fajans, Elizabeth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Texas law review v.96-6 /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exas law review v.96-7 /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8	
Verhandlungen des Einundsiebzigsten Deutschen Juristentages: Essen 2016. Bd. I Gutachten Teil B: Digitalisierung der Arbeitswelt: Herausforderungen und Regelungsbedarf / Ständigen Deputation des Deutschen Juristentages	C.H. Beck	2016	
Washington law review v.93-2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Washington Law Review Association	2018	
Wörterbuch Recht, Wirtschaft & Politik, band 2: Deutsch-Spanisch / Becher, Herbert Jaime Schlüter-Ellner, Corinna	C.H.Beck	2017	
Wörterbuch Recht, Wirtschaft, Politik, band 1: Spanisch-Deutsch / Becher, Herbert Jaime Schlüter-Ellner, Corinna	C.H. Beck	2017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조선의 법추론 인울비부 / 김대홍	민속원	2018	
Failures of American methods of lawmaking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 Maxeiner, James 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8) 해외상표출원인을 위한 마드리드국제출원가이드: 서식편 / 특허청	진한엠엔비(Jinhan M&B)	2018	
(2018) 해외상표출원인을 위한 마드리드국제출원가이드: 설명편 / 특허청	진한엠엔비(Jinhan M&B)	2018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법: 2018년 신고대비 겸 / 김규수	삼일인포마인	2017	
(理智) 디자인보호법 / 김인배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8	
(알기쉬운)건설업 별칙규정 / 건설경제	건설경제	2018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지분법과 연결회계 이론과 실무 / 박길동	삼일인포마인	2016	
(임금설계를 통한) 급여와 4대보험 실무 / 김경하	삼일인포마인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RS 환경책임 / 勝田悟	박영사	2018	
FRAND 협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 나지원	景仁文化社	2018	
건설업 노무관리 실무 Q&A / 다현	좋은땅	2018	
경제법: 이론과 사례 / 장윤순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국가계약 제정법 회계·건설 총람 / 대한건축건설법령연구회	법문북스	2018	
동업기업 과세특례 / 이준규	삼일인포마인	2018	
법인세 조정과 신고 실무: 2018년 신고대비 / 삼일회계법인	삼일인포마인	2017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소송실무자료. [1. 2018년 7월 개정]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8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 / 최성일	삼일인포마인	2018	
상표법 /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8	
상표법 / 윤선희	法文社	2018	
세법강의 / 이철재	세경사	2018	
세법개론: vat · income tax · corporate tax · inheritance tax · gift tax · etc. / 강경태	샘앤북스	2018	
소비자계약의 법리 / 서희석	부산대학교출판부	2018	
승계전략의 기법과 세무: 자산가의 법인전환에서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경영권 승계까지 / 장두기	삼일인포마인	2017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 한연호	삼일인포마인	2018	
자본거래와 세무 / 홍성대	삼일인포마인	2018	
중국경제법의 이해 / 김종우	산지니	2018	
Allgemeine Steuerlehre / Homburg, Stefan	Vahlen	2015	
Arbeitsrechts-Handbuch: systematische Darstellung und Nachschlagewerk für die Praxis / Schaub, Günter	C.H. Beck	2017	
Art and Authority: Moral Rights and Meaning in Contemporary Visual Art / Gover, K. E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A) user's guide to copyright / Flint, Michael	Bloomsbury Professional	2017	
Authors, users, and pirates: copyright law and subjectivity / Meese, James	The MIT Press	2018	
Certification and Collective Marks: Law and Practice / Belson, Jeffrey	Edwar Elgar Publishing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ntemporary Issues in Pharmaceutical Patent Law: Setting the Framework and Exploring Policy Options / Mercurio, Bryan	Routledge	2017	
Copyright and Information Privacy: Conflicting Rights in Balance / Giovanella, Federica	Edwar Elgar Publishing	2017	
Copyright Exhaustion: Law and Policy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 Mezei, Pét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Copyright: Unfair competition, and related topics bearing on the protection of works of authorship / Brown, Ralph S	Foundation Press	2017	
Copyright user rights: Contracts and the Erosion of Property / Chapdelaine, Pascale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Das) Patentsekretariat: die Bürofachkraft im gewerblichen Rechtsschutz / Huppertz, Monika	Heymann	2016	
Digitale Wirtschaft – analoges Recht: braucht das BGB ein Update?: Gutachten A zum 71. Deutschen Juristentag / Faust, Florian	C.H. Beck	2016	
Form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 Booton, David	Edwar Elgar Publishing	2017	
Foto- und Bildrecht / Wanckel, Endress	C.H.Beck	2017	
Geistiges Eigentum: Vorschriftensammlung zum gewerblichen Rechtsschutz, Urheberrecht und Wettbewerbsrecht / Mächtel, Florian	Mohr Siebeck	2017	
Geographical indications at the crossroads of trade, development, and culture: focus on Asia-Pacific / Calboli, Ire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Grounds of the immaterial: a conflict-based approach to intellectual rights / Dijk, Niels van	Edwar Elgar Publishing	2017	
Grundstücksrecht: Textausgabe mit ausführlichem Sachregister und einer Einführung: stand: 24. Mai 2017 / Stürner, Rolf	dtv	2017	
Grundzüge des Wirtschaftsprivatrechts / Mehrings, Josef	Vahlen	2015	
Guide to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 Companion to Data Protection Law and Practice (4th Edition) / Jay, Rosemary	Sweet & Maxwell	2017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Volume 1 / Ghosh, Shubha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17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Volume 2 / Ghosh, Shubha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17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Domain / Merges, Robert P	An Elgar Research Collection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ntellectual Property Jurisdiction Strategies: Where to Litigate Unitary Rights vs National Rights in the EU / Larsen, Torsten Bjørn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Kartellrecht: mit 8. GWB–Novelle / Lettl, Tobias	C.H.Beck	2017	
Kerly's Law of trade marks and trade names / Kerly, Duncan Mackenzie	Sweet & Maxwell	2018	
Kirchenrecht: ein Studienbuch / Wall, Heinrich de	C.H. Beck	2017	
Kollektivanlagengesetz / Bösch, René	Helbing Lichtenhahn Verlag	2016	
Kommentar zum Sozialrecht: VO (EG) Nr. 883/2004, SGB I bis SGB XII, SGG, BAföG, BEEG, Kindergeld (EStG), UnterhaltsvorschussG, WoGG / Kreikebohm, Ralf	C.H.Beck	2017	
Kompaktkommentar Vergaberecht / Willenbruch, Klaus	Werner Verlag	2017	
Labour law in France / Despax, Michel	Kluwer Law international	2017	
Landmark Cases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 Bellido, Jose	Hart Publishing	2017	
Medienrecht: Lehrbuch des gesamten Medienrechts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von Presse, Rundfunk und Multimedia / Fechner, Frank	Mohr Siebeck	2017	
Patent claim construction in the federal circuit /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of Chicago(IPLAC)	Thomson Reuters	2018	
Patenting Genes: The Requirement of Industrial Application / Pozo, Marta Diaz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Patent Pledges: Global Perspectives on Patent Law's Private Ordering Frontier / Contreras, Jorge L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Plugged In: Guidebook to Software and the Law / Garrie, Daniel B	Thomson Reuters	2018	
Practitioner's Trademark Manual of Examining Procedure / Hawes, James E	Thomson Reuters	2018	
Principles of patent law: cases and materials / Golden, John M	Foundation Press	2018	
Privatised Law Reform: A History of Patent Law through Private Legislation, 1620–1907 / Johnson, Phillip	Routledge	2018	
Research handbook on copyright law / Torremans, Paul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Research Handbook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Climate Change / Sarnoff, Joshua D	Edward Elgar Publishing	2016	
Research Handbook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Life Sciences / Matthews, Duncan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Research Handbook on Intellectual Property in Media and Entertainment / Richardson, Megan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Research handbook on the history of copyright law / Alexander, Isabella	Edward Elgar Publishing	2016	
Rethinking Intellectual Property: Balancing Conflicts of Interests in the Constitutional Paradigm / Ghidini, Gustavo	Edwar Elgar Publishing	2018	
SGB: Kommentar. VI: Sozialgesetzbuch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 Kreikebohn, Ralf Dünn, Sylvia	C. H. Beck	2017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 Lehr- und Praxiskommentar / Münder, Johannes	Nomos	2016	
(The) Commercial Appropriation of Fame: A Cultural Analysis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Passing Off / Tan, Davi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Outer Space Activities / Leepuengtham, Tosaporn	Edwar Elgar Publishing	2017	
(The) Subject Matter of Intellectual Property / Pila, Justine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Vorsorgeverfügungen: Patientenverfügung, Vorsorgevollmacht, Betreuungs- und Organverfügung / Winkler, Matthias	C.H.Beck	2016	
Wettbewerbsrecht / Lettl, Tobias	C.H.Beck	2016	
Wettbewerbs- und Kartellrecht, gewerblicher Rechtsschutz: Examenkurs für Rechtsreferendare / Haberstumpf, Helmut	C.H.Beck	2015	
Wirtschaftsprivatrecht: Bürgerliches Recht, Handelsrecht, Gesellschaftsrecht / Führich, Ernst	Vahlen	2017	
Wirtschaftsprivatrecht: rechtliche Grundlagen wirtschaftlichen Handelns / Müssig, Peter	C.F. Müller	2018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WTO 무역과 환경사례 연구 / 박덕영	박영사	2018	
배출권거래와 WTO법 / Deane, Felicity	박영사	2018	
상사중재법 / 목영준	박영사	2018	
(Re)structuring copyright: a comprehensive path to International copyright reform / Gervais, Daniel J	Edwar Elgar Publishing	2017	
(The) Contribution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o the Rule of Law: 1996-2016 /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Brill Nijhoff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WTO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converging systems / Kurtz, Jürg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EMRK: Konvention zum Schutz der Menschenrechte und Grundfreiheiten: Kommentar / Karpenstein, Ulrich	Beck	2015	
Entscheidungen des EuGH: kommentierte Studienauswahl / Pechstein, Matthias	Mohr Siebeck	2018	
Europarecht / Haratsch, Andreas	Mohr Siebeck	2018	
Grundkurs Europarecht / Schroeder, Werner	C.H.Beck	2017	
International Patent Rights Harmonisation: The Case of China / Hu, Weinian	Routledge	2017	
International trademark dilution / Bereskin, Daniel R	Thomson Reuters	2018	
Internationales Strafrecht: IRSG, GwÜ / Niggli, Marcel Alexander	Helbing Lichtenhahn Verlag	2015	
Internationales UN-Kaufrecht: ein Studien- und Erläuterungsbuch zum 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Verträge über den internationalen Warenkauf (CISG) / Schlechtriem, Peter	Mohr Siebeck	2016	
Internationales Wirtschaftsrecht: ein Studienbuch / Herdegen, Matthias	C.H. Beck	2017	
Maritime Cross-Border Insolvency: Under the European Insolvency Regulation and the Uncitral Model Law / Athanassiou, Lia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18	
Staatsangehörigkeitsrecht / Hailbronner, Kay	C.H.Beck	2017	
Völkerrecht / Stein, Torsten	Vahlen	2017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10대를 위한) 선거 수업: 미래를 바꾸는 정치 사용 설명서 / 승지홍	다른	2018	
(10대를 위한) 헌법 토론: 미래를 바꾸는 헌법 사용 설명서 / 서윤호	다른	2018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과 기원: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과 제헌헌법의 연속성 / 김광재	월비스	201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박승욱	한울출판사	2018	
중동국가 헌법 번역HK총서, 11: 이집트 아랍 공화국 헌법 / 김중도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모시는사람들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강의: 법무사 · 고시 · 승진 · 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 권순현	三潮社	2018	
(The) Right to Privacy: Origins and Influence of a Nineteenth-Century Idea / Richardson, Meg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Betrieblicher Datenschutz: Rechtshandbuch / Forgó, Nikolaus	C. H. Beck	2017	
Bulk Collection: Systematic Government Access to Private-Sector Data / Cate, Fred H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Courts,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n the Digital Environment / Brkan, Maja	Edwar Elgar Publishing	2017	
Grundgesetz: Textausgabe mit sämtlichen Änderungen und weitere Texte zum deutschen und europäischen Verfassungsrecht / Dreier, Horst	Mohr Siebeck	2017	
Legislation and Regulation in a Nutshell / Huefner, Steven F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Linie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erörtert von den wissenschaftlichen Mitarbeitern, Bd. 4 / Scheffczyk, Fabian Wolter, Kathleen	De Gruyter	2017	
Öffentliches Recht im Nebenfach: Verfassungsrecht, Verwaltungsrecht, Europarecht mit Übungsfällen / Detterbeck, Steffen	Vahlen	2017	
Öffentliches Recht: ein Basislehrbuch zum Staatsrecht, Verwaltungsrecht und Europarecht mit Übungsfällen / Detterbeck, Steffen	Vahlen	2015	
Speech and society in turbulent times: freedom of express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 Price, Monro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Staatsrecht, II: Grundrechte / Manssen, Gerrit	C.H.Beck	2018	
Staatsrecht, III: auswärtige Gewalt, Bezüge des Grundgesetzes zu Völker- und Europarecht / Sauer, Heiko	C.H.Beck	2016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新)鑑定評價法: 감정평가법 이론연구 · 실무 지침서 / 이선영	리북스	2018	
(新)土地收用과 補償法論: 토지보상법 이론서 / 이선영	리북스	2017	
(일본 도로법을 통해 본) 도로점용의 법리와 도로관련공사 비용부담 / 송재우	코레드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가소송의 이론과 실무: 소송실무자료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8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 하명호	경인문화사	2018	
행정법담론 / 김재광	박영사	2018	
행정법입문 / 박군성	박영사	2018	
行政判例와 公益: 晴潭 崔松和 教授 喜壽 紀念論文集 / 청담 최송화 교수 희수 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박영사	2018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ein Studienbuch / Götz, Volkmar	C.H.Beck	2017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 Ipsen, Jörn	Vahlen	2017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mit Verwaltungsprozessrecht / Detterbeck, Steffen	C.H.Beck	2018	
Polizei- und Ordnungsrecht / Gusy, Christoph	Mohr Siebeck	2017	
Polizei- und Ordnungsrecht / Thiel, Markus	Nomos	2016	
Verwaltungsprozessrecht / Schenke, Wolf-Rüdiger	C. F. Müller	2017	
Verwaltungsrecht / Johlen, Heribert	C.H. Beck	2017	
Verwaltungsrecht: Schriftsatzmuster und Erläuterungen, materielles Recht, Verfahrensrecht / Eiding, Lutz	Nomos	2017	
Verwaltungsrecht: VwVfG/VwGO/Nebengesetze: Handkommentar / Fehling, Michael	Nomos	2016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정명진	東國大學校	2017	
처벌의 원리: 공동체 가치로서 연대성과 처벌의 인간화 / 김혜경	마인드맵	2018	
Gesamtes Verkehrsrecht: Verkehrszivilrecht, Versicherungsrecht, Ordnungswidrigkeiten- und Strafrecht, Verkehrsverwaltungsrecht / Haus, Klaus-Ludwig	Nomos	2017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Göhler, Erich	C. H. Beck	2017	
Strafgesetzbuch: Kommentar / Satzger, Helmut	Carl Heymanns Verlag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trafgesetzbuch: Studienkommentar / Joecks, Wolfgang	C.H. Beck	2018	
Strafrecht Allgemeiner Teil / Kudlich, Hans	C.H.Beck	2016	
Strafrecht allgemeiner Teil: ein Studienbuch / Frister, Helmut	C.H.Beck	2015	
Strafrecht Besonderer. Teil I: Straftaten gegen Persönlichkeitsrechte, Staat und Gesellschaft / Kindhäuser, Urs	Nomos	2017	
Strafrecht Besonderer. Teil. II: Straftaten gegen Vermögensrechte / Kindhäuser, Urs	Nomos	2017	
Strafrecht, allgemeiner Teil / Hilgendorf, Eric	C.H.Beck	2015	
Straßenverkehrsrecht / Jagusch, Heinrich	C.H.Beck	2017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업경영과 법의 만남 / 신홍철	오래	2018	
商法要解 / 김선광	피앤씨미디어	2018	
(Der) Autokauf: Rechtsfragen beim Kauf neuer und gebrauchter Kraftfahrzeuge sowie beim Leasing / Reinking, Kurt	Werner	2017	
(The) Bill of Lading: Holder Rights and Liabilities / Stevens, Frank	Routledge	2018	
Admiralty in a nutshell / Maraist, Frank L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Grundkurs Handels- und Gesellschaftsrecht / Kindler, Peter	C.H. Beck	2016	
Handels- und Gesellschaftsrecht / Roth, Günter H	Vahlen	2016	
Handels- und Gesellschaftsrecht: mit Fällen und Aufbauschemata / Maties, Martin	C.H.Beck	2016	
Insurance Law Implications of Delay in Maritime Transport / Bugra, Aysegül	Routledge	2018	
Kommentar zum Handelsgesetzbuch / Oetker, Hartmut	C.H.Beck	2017	
London Maritime Arbitration / Ambrose, Clare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18	
Maritime law / Baatz, Yvonne	Routledge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Outsourcing the board: how board service providers can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 Bainbridge, Stephen 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Transportrecht: Kommentar zu Spedition, Gütertransport und Lagergeschäft / Koller, Ingo	C.H.Beck	2016	

[사법, 소송절차, 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9) 民事執行法講義 / 한봉상	延世出版社	2018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민사·상사·노동재판: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념/ 재임기간 2011. 9. ~ 2017. 9. 제1권 / 한국. 법원행정처	사법발전재단	2018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형사재판: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념/ 재임기간 2011. 9. ~ 2017. 9. 제2권 / 한국. 법원행정처	사법발전재단	2018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헌법·행정·조세·지식재산재판: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념/ 재임기간 2011. 9. ~ 2017. 9. 제3권 / 한국. 법원행정처	사법발전재단	2018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사법행정: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념/ 재임기간 2011. 9. ~ 2017. 9. 제4권 / 한국. 법원행정처	사법발전재단	2018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연설문: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념/ 재임기간 2011. 9. ~ 2017. 9. 제5권 / 한국. 법원행정처	사법발전재단	2018	
民法과 民事執行法の 關係: 理論·事例·分析 / 전장현	법률정보센터	2018	
민사집행법연구. II / 손홍수	유로	2018	
소장작성 매뉴얼 및 소송전략 / 김덕원	진원사	2018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이야기: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원 이야기. 제1권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8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이야기: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 제2권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8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이야기: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재판이야기. 제3권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8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이야기: 세계의 법원과 재판이야기. 제4권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8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이야기: 교과서 속, 법으로 사는 세상. 제5권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8	
(Beck'sches) Rechtsanwalts-Handbuch / Büchting, Hans-Ulrich	C.H.Beck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3]: Ergänzungsband / Bauer, Thomas	Helbing Lichtenhahn Verlag	2017	
Chapter 11 Reorganizations: issued in February 2018 / Drake, W. Homer, Jr	Thomson Reuters	2018	
Commercial bankruptcy litigation / Friedland, Jonathan P	Thomson Reuters	2018	
Einführung in das Insolvenzrecht / Bork, Reinhard	Mohr Siebeck	2017	
Environmental obligations in bankruptcy: issued in January 2018 / Ahern, Lawrence R. III	Thomson Reuters	2018	
Kölner Kommentar zur Insolvenzordnung. Bd. 1: § § 1-55 InsO / Hess, Harald	Carl Heymanns	2016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 Spühler, Karl	Helbing & Lichtenhahn	2017	
Verfahrensrecht: Übungsfälle für Rechtsfachwirte / Natterer, Edith	C.F.Müller	2016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 김동근	법률출판사	2017	
민사소송법 / 강현중	박영사	2018	
Technik und Taktik der Befragung im Gerichtsverfahren: Urteile begründen, Urteile prüfen, Lügen und Irrtum aufdecken / Wendler, Axel	Kohlhammer	2015	
Zivilprozessordnung und Nebengesetze: Großkommentar. Bd. 1/1: Einleitung; §§1-23a / Wieczorek, Bernhard	de Gruyter	2015	
Zivilprozessordnung und Nebengesetze: Großkommentar. Band 1/2: § § 24-49 / Wieczorek, Bernhard	de Gruyter	2015	
Zivilprozessordnung und Nebengesetze: Großkommentar. Band 2/2: § § 78-127a / Wieczorek, Bernhard	de Gruyter	2015	
Zivilprozessordnung und Nebengesetze: Großkommentar. Band 5/1: § § 300-329 / Wieczorek, Bernhard	de Gruyter	2015	
Zivilprozessordnung und Nebengesetze: Großkommentar. Band 5/2: § § 330-354 / Wieczorek, Bernhard	de Gruyter	2017	
Zivilprozessordnung und Nebengesetze: Großkommentar. Band 9: § § 724-802l / Wieczorek, Bernhard	de Gruyter	2016	
Zivilprozessordnung und Nebengesetze: Großkommentar. Band 10/1: § § 803-863 / Wieczorek, Bernhard	de Gruyter	2015	
Zivilprozessordnung und Nebengesetze: Großkommentar. Band 10/2: § § 864-915h / Wieczorek, Bernhard	de Gruyter	2015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trafprozessordnung: Studienkommentar / Joecks, Wolfgang	C.H.Beck	2015	
Systematischer 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ng: Mit GVG und EMRK, Band II: §§94-136a StPO / Wolter, Jürgen	Carl Heymanns	2016	
Systematischer 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ng: Mit GVG und EMRK, Band III: §§137-197 StPO / Wolter, Jürgen	Carl Heymanns	2016	
Systematischer 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ng: Mit GVG und EMRK, Band IV: §§198-246 StPO / Wolter, Jürgen	Carl Heymanns	2015	
Systematischer 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ng: Mit GVG und EMRK, Band V: §§ 246a - 295 StPO / Wolter, Jürgen	Carl Heymanns	2016	
Systematischer 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ng: Mit GVG und EMRK, Band VI: §§296-332 StPO / Wolter, Jürgen	Carl Heymanns	2016	
Systematischer 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ng: Mit GVG und EMRK, Bd. IX: GVG; EGGVG / Wolter, Jürgen	Carl Heymanns	2016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실무에서 문제되는) 유형별 소멸시효: 이론·법령·판례 유기적으로 정리: 재판실무자료, [1. 2018년 7월 개정] / 강부환	법률정보센터	2018	
(판례로 배우는) 친족법·상속법 / 박영규	法元社	2018	
(판례와 함께하는) 임대주택 관련법 해설 / 임진욱	북랩	2018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8	
대포차 소송실무 / 신형삼	좋은땅	2018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의 입법과 법리 / 윤대성	소명출판	2018	
로스쿨 민법의 정석 / 정연석	피앤씨미디어	2018	
미래등기시스템 타당성 분석을 위한 연구 / 엘지씨엔에스	법원행정처	2017	
민법백과사전, 제1권: 민법총칙/ 물권편 / 대한민사법실무연구회	법률미디어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법백과사전. 제2권: 채권편 / 대한민사법실무연구회	법률미디어	2018	
민법백과사전. 제3권: 친족/ 상속편 / 대한민사법실무연구회	법률미디어	2018	
민법입문 / 양창수	박영사	2018	
세법 속 민법의 이해 / 김성균	박영사	2018	
외국인 · 재외동포(재외국민) 부동산등기실무: 부동산취득 · 처분 · 상속 · 증여 · 근저당 · 대위 / 변강림	로복스	2018	
Allgemeine Verkaufsbedingungen / Westphalen, Friedrich von	C.H.Beck	2016	
Anfechtungsgesetz(AnfG): Gesetz über die Anfechtung von Rechtshandlungen eines Schuldners außerhalb des Insolvenzverfahrens / Huber, Michael	C.H.Beck	2016	
BGB allgemeiner teil: mit vielen Fällen, Beispielen und Übersichten / Wertenbruch, Johannes	C.H.Beck	2017	
Deliktsrecht / Kötz, Hein	Verlag Franz Vahlen	2016	
Erbrecht / Löhnig, Martin	Franz Vahlen	2016	
Ersatzansprüche bei Personenschaden: eine praxisbezogene Anleitung / Wussow, Werner	C.H.Beck	2016	
Europäisches Privat- und Wirtschaftsrecht / Langenbucher, Katja	Nomos	2017	
Fälle zur Vertragsgestaltung / Eckert, Frank	C.H.Beck	2016	
FamFG: 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Kommentar / Keidel, Theodor	C.H.Beck	2017	
Familienrecht / Muscheler, Karlheinz	Franz Vahlen	2017	
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 und Partnerschaftsgesellschaft: systematischer Kommentar / Ulmer, Peter	C.H.Beck	2017	
Gesetzliche Schuldverhältnisse: Deliktsrecht, Schadensrecht, Bereicherungsrecht, GoA: ein Lehrbuch für Studium und Examen / Schwarz, Gunter Christian	Vahlen	2017	
Juris PraxisKommentar BGB. Band 2.1: Schuldrecht(Teil.1: § § 241 bis 432) / Junker, Markus Herberger, Maximilian	Juris	2015	
Juris PraxisKommentar BGB. Band 2.2: Schuldrecht(Teil 2: § § 433 bis 630) / Beckmann, Roland Michael Herberger, Maximilian	Juris	2015	
Juris PraxisKommentar BGB. Band 2.3: Schuldrecht(T. 3: § § 631 bis 853) / Russann, Helmut Herberger, Maximilian	Juris	201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Juris PraxisKommentar BGB, Band 4: Familienrecht / Viefhues, Wolfram Herberger, Maximilian	Juris	2015	
Juris PraxisKommentar BGB, Band,6: Internationales Privatrecht und UN-Kaufrecht / Ludwig, Ingo Herberger, Maximilian	Juris	2015	
Miete: Kommentar: das gesamte BGB-Mietrecht / Blank, Hubert	C.H.Beck	2017	
Sachenrecht nach Anspruchsgrundlagen: samt Wohnungseigentums- und Grundbuchrecht / Schellhammer, Kurt	C.F. Müller	2017	
Schuldrecht AT / Lange, Knut Werner	C.H.Beck	2018	
Schuldrecht. IV: Deliktsrecht und Schadensrecht / Grigoleit, Hans Christoph	C.H.Beck	2017	
Schuldrecht. I: Allgemeiner Teil / Joussem, Jacob	Kohlhammer	2017	
Stiftungsrecht: Erscheinungsformen und Errichtung der Stiftung, Stiftungsaufsicht, Verwaltung des Stiftungsvermögens, Stiftungssteuerrecht, Rechnungslegung und Publizität, Internationales Stiftungsrecht: mit Mustern / Schlüter, Andreas	C.H. Beck	2016	
Zivilrechtliche Klausurenlehre: mit Fallrepetitorium / Olzen, Dirk	Vahlen	2015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新・判例解説 Watch v.20 /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7	

• 정기간행물 목록

[국내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 572호	(주)거래가격	월간
2	경쟁과 법 2018.6.(제10호)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반년간
3	고시계 739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4	국제법학회논총 63권2호	대한국제법학회	부정간
5	문학사상 2018년 9월	문학사상사	월간
6	산업재산권 56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연3회
7	상사법연구(商事法研究) 37권2호(99호)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8	속보삼일총서 1481,1482,부록,1456,1466~1474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시사저널 N1504,1505,1506	독립신문사	주간
10	신동아 2018.9월	(주)동아피디에스	월간
11	월간조선 2018년 9월	조선일보사	월간
12	이코노미스트 1446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주간
13	종합물가정보 574호 I, II, 부록	한국물가정보	월간
14	주간조선 N2520,2521,2522,2523	조선일보사	주간
15	출판저널 V506	(주)출판저널문화미디어	월간
16	항공우주법학회지 33권1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반년간
17	해사법연구 30권2호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
18	현대문학 2018년 8월	(주)현대문학	월간

[일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刑事辯護 N95	現代人文社	계간
2	(旬刊)商事法務 N2171,2172,2173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3	登記情報 58권제8호	民事法情報センター	월간
4	N.B.L 1126호, 1127호	商事法務研究會	반월간
5	COPYRIGHT V58 N688	著作権情報センター	월간
6	ジュリスト 1522호	有斐閣	월간
7	パテント(Patent) V71 8호(2018.7.)	日本弁理士會	월간
8	國際法外交雜誌 117권1호	有斐閣	계간
9	國際商事法務 V46 N7	國際商事法研究所	월간
10	金融商事判例 N1545,1546	經濟法令研究會	반월간
11	金融法務事情 2093호, 2094호	金融財政事情研究會	순간
12	勞動法律旬報 1915, 1916	勞動旬報社	순간
13	勞動判例 N1179, 1180	産業勞動調査所	반월간
14	登記研究 845호	テイハン	월간
15	文藝春秋 2018.9	文藝春秋	월간
16	民商法雜誌 154권3호	有斐閣	월간
17	發明 V115 N8	發明協會	월간
18	法律のひろば 71권8호	きょうせい	월간
19	法律時報 별책57호, 90권9호	日本評論社	월간
20	法律判例文獻情報 476호	第一法規	월간
21	法曹時報 70권7호	法曹會	월간
22	法學セミナー 763호	日本評論社	월간
23	法學教室 455호	有斐閣	월간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24	法學新報 125권1-2	中央大學法學會	월간
25	法學研究 91권6호	慶應義塾大學法學研究會	월간
26	法學協會雜誌 135권7호	有斐閣	월간
27	銀行法務 21831호	經濟法令研究會	월간
28	自治研究 94권8호	良書普及會	월간
29	著作權研究 44호	著作權法學會	연간
30	租稅法研究 46호	租稅法學會	연간
31	租稅研究 825호(2018.7)	日本租稅研究協會	월간
32	罪 と 罰 55권3호	日本刑事政策研究會	계간
33	阪大法學 68권2호	大阪大學法學部	격월간
34	判例タイムズ 1449호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35	判例時報 N2369, 2370, 2371, 2372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地方自治 N434, 435	きょうせい	월간
37	海事法研究會誌 240호	日本海運集會所	격월간
38	戶籍 956호	テイハン	월간
39	環境法政策学会誌 V21	環境法政策学会	연간

[양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national law journal 2018. 8월	New York Law Pub.	주간
2	ABA journal(ABA) 2018. 8월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3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941,942,943	Editorial Aranzadi S.A.	격주간
4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B143 H2	J.C.B. Mohr	계간
5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B218 H2-4	Mohr Siebeck	격월간
6	ArchivFürKriminologie;UnterBesondererBeruecksichti gun Bd242 H1-2	Max Schmidt-Romhild KG	격월간
7	Archiv für Pressrecht J49 H4	C. H. Beck	격월간
8	Arsp (Archiv Für Rechts-Und Sozialphilosophie/Archives For Phil) V104 ISSUE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9	Betriebs-Berater (BB)J73 H30,32,33,34,35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0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 V96 N2370	BNA	주간
11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2017 Edition3	Council of Europe	연3회
12	Bundesgesetzblatt :Part 1 & Part 2 I.Nr 27,28,29,30 / II.Nr 12,13,14	Bundesanzeiger Verlagsges.mmbH	주2회
13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51 N4	Columbia University	계간
14	Computer und Recht 2018 H8, I4	Dr.Otto Schmidt	월간
15	Der Deutsche Rechtspfleger J126 H8-9	Gieseking	월간
16	Der Spiegel N30,31,32,33,34,35	Spiegel	주간
17	Der Staat Bd57 H2	Duncker & Humblot	계간
18	Deutsches Verwaltungsblatt(DVBL) (Includes: Verwaltungsarchiv) J133 H13,14,15,16	Carl Heymanns	반월간
19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 J63 H15,16	Otto Schmidt	격주간
20	Die Öffentliche verwaltung(DÖV) J71 H15,16	Kohlhammer	반월간
21	Die Praxis 2018 H8	Helbing & Lichtenhahn	월간
22	Europäische Grundrecht-Zeitschrift J45 H13-17	N.P. Engel	반월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23	Europarecht J53 H4	Nomos-Verl	격월간
24	Euzw (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29 H15,16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25	Familie Und Recht J29 H8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26	Family Court Review VOL56 N3	Blackwell	계간
27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GRUR) J120 N8	VCH	월간
28	Gol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J165 H7,8	R. v. Decker's Verlag, G. Schenck	월간
29	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10 H15,16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30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prechung H8	Stollfuß	월간
31	Human Rights Law Journal V37 N7-12	N.P. Engel Verlag	월간
3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35 N30,31,32,33	Bureau of National Affairs(BN A)	주간
33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30 N2	Oxford Journal	연3회
34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6 N2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35	Journal of Maritime Law & Commerce V49 N2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36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9 N4,5, V100 N1,2	JPTOS	격월간
37	Judicature V102 N2	A.J.S	계간
38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40 H8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월간
39	Juristen Zeitung (JZ)J73 H15/16	J.C.B. Mohr	반월간
40	Juristische Rundschau 2018 H8	Walter de Gruyter	월간
41	Juristische Schulung J58 H8	C.H. Beck	월간
42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8 H6,7	C.H.Beck	월간
43	La Semaine Juridique 1. edition generale 2018 N1-2	Juris-Classeur	주간
44	La Semaine Juridique 1. entreprise et affaires 2018 N1-2	JCP	주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45	La Semaine Juridique 2. notariale et immobiliere 2017 N29, 2018 N1	JCP	주간
46	L'actualité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AJDA) N27,28	Dalloz	주간
47	Law and Human Behavior Vol42 N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48	Le Droit Ouvrier N841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49	Lloyd's Law Reports:Insurance& Reinsurance 2018 P6	LLP	연10회
50	Lloyd'sMaritimeandcommercial Law QuarterlyYEARBOOK 2018	LLP	계간
51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72 H14,15,16,17	Otto Schmidt	반월간
5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NJW) J71 H13,31,32,33,34,35,spezial 6,12,15,16,17	C. H. Beck	주간
53	Neue Zeitschrift Fur Arbeitsrecht(Nza) J35 H14,15,16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4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Nstz) J38 H8	C. H. Beck	월간
55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NVwZ) J37 H15,16	C. H. Beck	월간
56	Nj Neue Justiz J72 H8	Nomos	월간
57	NZG(Neue Zeitschrift für Gasellschaftsrecht) J21 H22,23,24	Verlag C. H. Beck oHG	순간
58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ÖJZ) J73 H16	Manz	반월간
59	Recht Der Arbeit J71 H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60	Rechtspfleger Studienhefte J42 H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월간
61	Recueil Le Dalloz N29(2018)	Dalloz	주간
6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8 N2	Dalloz	계간
6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8. 8-9.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64	Revue Franc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114(2018,6)	PUF	계간
65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8 N2	Dalloz	계간
66	RevueTrimestriellededroitCommercial et de droit économique 2018 N2	Dalloz	계간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67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2018 N2	EDITIONS DALLOZ	계간
68	RW(Rechtswissenschaft startet) J9 H1	Verlagsgesellschaft mbH & co.KG	계간
69	Stanford Law Review VOL70 N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70	Strafverteidiger (StV) J38 H9	Alfred Metzner	월간
71	The Economist 8.11(9104), 8.18(9105), 8.25(9106), 9.1(9107), 9.8(9108)	The Economist Group	주간
72	The Law quarterly Review Vol134 (2018,July)	Sweet & Mawell	계간
73	TIME 8.20, 8.27, 9.3+9.10	Time Asia	주간
74	Transportrecht J41 H6	Luchterhand	월간
75	Verfassung Und Recht In Uebersee J51 H1	Nomos Verlagsgesellschaft mbH und Co. KG	계간
76	Versicherungsrecht J69 H15,16	Versicherungswirtschaft e. V.	순간
77	Wissenschaftsrecht B50 H3	Mohr Siebeck GmbH & Co. KG	계간
78	WM (Wertpapier-Mitteilungen:Zeitschrift Für Wirtschafts Und Ba) J72 N29,30,31,32,33,34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79	Wuw (Wirtschaft Und Wettbewerb; Zeitschrift Für Kartellrecht, W) J68 H7-8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80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J78 H2	Kohlhammer	계간
81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65 H15,16	Giesecking	반월간
82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B182 H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격월간
83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B130 H2	WalterGruyter	계간
84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zsr) B137 H3, II	Helbing & Lichtenhahn	격월간
85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ZIP) J39 H1,2,3,4,5,6,7,8,9,10,11,12,13,29,31,32,33,34 EWIR1,2,3,4,5,6,15,16	RWS	주간
86	Zeitschrift für Europäisches Privatrecht(ZEUP) 3/2018	C.H.Beck	계간

